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 01. 2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 05. 0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 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명칭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87683)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f	종류C-w	종류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6583	86584	86585	86586	86587	86588

2. 모집예정기간: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주 2)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또 다른 자투자신탁은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입니다.

	모투자신탁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100% 이하)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6. 집합투자업자: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층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먼트매니지먼트(주) 설립 ▪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 허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위탁회사

(1) 업무의 위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유케이) 리미티드(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UK) Limited)”가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유케이) 리미티드
주요 주주	BlackRock Group Limited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자 : 1986.05.16. • 자본금 : 350,389,000유로(2007.12.기준) • 주소 : 33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R 9AS, UK
운용자산규모	47,433,000,000유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채권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한다) ▪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비중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에의 투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유동성자산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통화관련 장내·외과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관련장내과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과생상품으로서 통화 선물 ▪ 통화관련장외과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과생상품으로서 통화 선물 및 통화스왑 ▪ 과생상품에의 투자는 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통화관련장내·외과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에 한함

※상기 투자대상은 모든 투자대상을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정식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주식	6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외국주식"이라 한다) ▪ 다만,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 중 금 및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국가의 국·내외에서 발행 및 보증한 것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채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기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투자대상은 모든 투자대상을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정식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및 증권예탁증서 등) 중 금 및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국가의 국·내외에서 발행 및 보증한 것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 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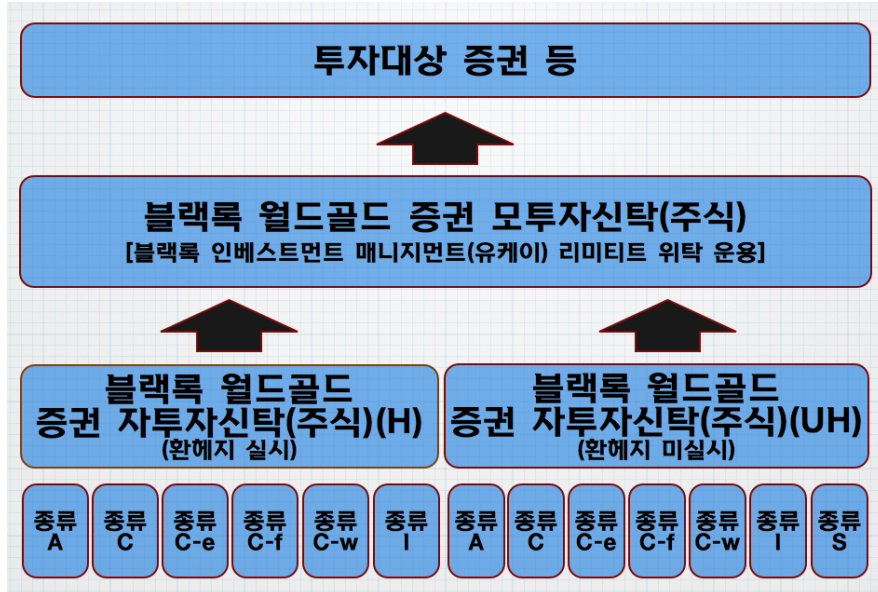
- (1)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및 증권예탁증서 등) 중 금 및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국가의 국·내외에서 발행 및 보증한 것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FTSE Gold Mines Index (Financial Times Share(or Stock) Exchange Gold Mines Index)
파이낸셜 타임스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인터내셔널사에서 전 세계의 금광 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편입하여 발표하는 지수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대상주식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국 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및 증권예탁증서 등) 중 금 및 귀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국가의 국·내외에서 발행 및 보증한 것에 투자함으로써 운용성과가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

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투자하는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당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세부내용
------	------	------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에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국공채를 비롯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회사채,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상 국공채 및 MMF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주 1)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블랙록자산운용(주)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동비율은 실제 편입비율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4)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재간접형구조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당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투자대상의 비율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바. 책임운용전문인력(2010.01.29.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조동혁	1963년	상무	17개	2,74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7년
이동찬	1973년	이사	17개	2,74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전략담당 - 푸르덴셜자산운용 해외채권팀장 - 리서치 2년/ 채권및해외펀드운용 8년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팀(Portfolio Management Group)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

문인력입니다.

사. 위탁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2010.01.29. 현재)

운용전문인력	운용 자산 규모	운용경력 및 이력
Evvy Hambro	246억 달러	- 1994년 천연자원 운용팀 입사 - New Castle University 졸업 - 광업주 및 천연자원주 관련 펀드 운용

7. 투자실적 추이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9.01.30 ~ 2010.01.29				2008.09.18 ~ 2010.01.29
월드골드자(H)	36.08				11.55
월드골드자(H)C-A	36.09				11.55
월드골드자(H)C-C	35.95				11.48
월드골드자(H)C-Ce	36.06				7.27
비교지수	21.78				11.10

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09.01.30 ~ 2010.01.29				
월드골드자(H)	36.08				
월드골드자(H)C-A	36.09				
월드골드자(H)C-C	35.95				
월드골드자(H)C-Ce	36.06				
비교지수	21.78				

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연간)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주1)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1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전환 수수료	-	-	-

주 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종류 I	
집합투자업자 보수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0	1.5000	1.5000	0.0500	0.0200	0.5000	
신탁업자 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포함) ^(주1)	0.1522	0.1549	0.1544	0.1549	0.1549	0.1549	
총보수비용 ^(주2)	2.1422	2.6449	2.6444	1.1949	1.1649	1.6449	-
증권거래비용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포함) ^(주3)	0.3539	0.3571	0.3589	0.3571	0.3571	0.3571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이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09.18. ~ 2009.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f수익증권, C-w수익증권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09.18. ~ 2009.09.1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f수익증권, C-w수익증권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1.0%로 가정)포함]	349	886	1,478	3,239
종류 C 수익증권	300	946	1,659	3,776
종류 C-e 수익증권	300	947	1,660	3,778
종류 C-f 수익증권	155	489	858	1,952
종류 C-w 수익증권	152	480	841	1,914
종류 I 수익증권	200	631	1,106	2,518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와 C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구 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집합투자업자 보수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1.0000	1.5000	1.5000	0.0500	0.0200	0.5000	0.0300	
신탁업자 보수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0.0300	
기타비용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포함) ^(주1)	0.1766	0.1714	0.1601	0.1714	0.1714	0.1714	0.1628	사유발생시
총보수 비용 ^(주2)	2.1666	2.6614	2.6501	1.2114	1.1814	1.6614	1.1828	-
증권거래비용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포함) ^(주3)	0.3419	0.3278	0.3159	0.3278	0.3278	0.3278	0.3141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이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09.09. ~ 2009.09.08.] 또한,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f수익증권, C-w수익증권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09.09. ~ 2009.09.08.]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f수익증권, C-w수익증권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 개인 15.4%(주민세 포함) - 일반법인 14%	이익을 지급받는 날

주 1)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②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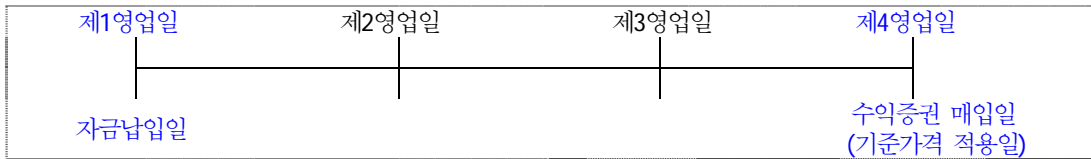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종류 A (협회코드: 86583)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협회코드: 86584)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협회코드: 86585)	전자매체(온라인)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C-f (협회코드: 86586)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전용 수익증권
종류 C-w (협회코드: 86587)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종류 I (협회코드: 86588)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 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08.09.18.~2009.09.17.)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20090917	-	-
I. 운용자산	7,930,808,302		
증권	7,325,459,983		
현금 및 예치금	605,348,319		
II. 기타자산	1,108,758,553		
자산총계	9,039,566,855		
II. 기타부채	1,013,876,643		
부채총계	1,013,876,643		
I. 원본	6,321,089,872		
II. 수익조정금	-65,727,625		
III. 이익잉여금	1,770,327,965		
자본총계	8,025,690,212		
I. 운용수익	1,829,750,608		
이자수익	2,405,050		
매매/평가차익(손)	1,819,679,703		
기타이익	7,665,855		
II. 운용비용	59,422,643		
관련회사보수	57,759,131		
기타비용	1,663,512		
III. 당기 순이익	1,770,327,965		
* 매매회전율 ^(주1)	0		
* 매매수수료	1,470,70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